

1. 개정이유

무도단체 간 형평성과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무도 분야 경찰공무원
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에 기존 태권도·유도
·검도·합기도 단증에 복싱·레슬링 단증을 추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무도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에
복싱·레슬링 단증을 추가함(안 별표 3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 무도사범, 경호 및 테러진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무도, 경호 및 테러진압	유도·검도·태권도· 복싱·레슬링 2단 이상 (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) 또는 합 기도 2단 이상(법인이 로서 중앙본부가 있으 며 8 이상의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 군데 이상의 체육도장 을 갖추고 있으면서 3 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 다)
------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정책담당관	
연 락 처	02-3150-2832